

친환경농자재의 사용요령

진천군농업기술센터

1. 친환경 농자재의 정의

- 넓은 뜻 :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 공급, 병해충 억제 및 생육촉진 등에 이용되는 환경친화적 물질을 총칭한다.
- 좁은 뜻 :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재 중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자재를 말한다.

2. 친환경농자재 유통현황

-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증대와 환경오염 경감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따라 천연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자재가 생산되고 있다.
- 병해충 발생억제, 작물 양분공급 및 생육촉진 강화등 대부분이 기존의 비료나 농약의 효과 또는 비료 와 농약의 효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이 광범위하고 유기성 자재로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객관적인 규격 제시가 어려우며, 약효 발현의 주성분과 살충, 살균 효과가 불분명하다.

〈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농자재 및 용도 〉

용 도	자재의 종류
농약 비료성분 공급 농약 + 비료효과 생육촉진 토양개량 기타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바이오크린활성수, 혼미식초 수용성인산, 그린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배양제, 유산균 미네랄 A, B, C, D, 과일효소, 비로돈, 천연식초 목탄, 비트모스, 맥반석 바닷물, 담배추출물, 발효깻묵, 해조류추출물 등 70여종

- 목초액, 키토산 등 일부 농자재는 미량요소, 제4종복합비료 원료로 공급되거나, 토양 미생물제제 등으로 유통됨.(연간 유통량 : 목초액 305톤, 키토산 500톤)
- 「농약, 비료」와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상 차이

용 도		친환경농자재
• 성분·효능 명확 • 대량생산 공장 • 확실한 유통경로 • 품질관리 용이	↔	• 특성·유호성분 불투명 • 소량주문 개인생산 • 다양하고 임의적 경로(업체, 자가제조 작목반 등) • 품질관리 곤란

3. 친환경농업육성법상의 사용가능 자재

- 관리근거 법규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7조

-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생산 시 사용 가능한 자재로 구분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하 자재의 사용기준
 -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 유기농산물

〈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재 〉

용 도	친 환 경 농 자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및 가금류의 퇴구비 • 오줌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 비료 • 건조된 농장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비 • 질소질 구아노 • 짚 빛 산야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등 화학합성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농약등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식물과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충국 제제 • 데리스 제제 • 쿠아시아 제제 • 라이아니아 제제 • 님(Neem) 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충국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무농약 농산물
 - 위 표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같음
- 저농약 농산물
 - 유기합성 제초제를 제외한 농약을 사용. 다만, 과수의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자재 사용 · 관리상의 문제점

-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사용목적이 포괄적이고 함유된 성분도 복합적이며, 효과 발현이 일정치 않는 등 시험결과 재현성이 없음
 - 국가차원의 품질관리와 효과검증을 농촌진흥청에 요구
- 대다수의 친환경자재는 주성분을 보증할 수 없어 농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농약 · 비료적 효과를 적극 선전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 품질인증 시 사용한 자재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고 품질에 대한 감시 감독 주체가 없어 이들 자재의 품질관리가 어렵다.
- 작물의 종류, 재배조건, 제조원, 투입량, 제조방법, 토양 및 기상여건 등 기술에 따라 효과의 변이 폭이 심하여 객관성 있는 품질기준 설정이 곤란한 실정이다.

- 친환경농자재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관련업계, 생산자, 연구자, 사용 농민 등이 보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일부농가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 따라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으나 대체적인 시험결과를 종합해보면 목초액, 키토산 등 친환경농자재는 단용 효과보다는 농약·비료와의 혼용 시 일부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친환경 농자재 선택 및 사용요령

가.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개념에 의한 친환경적 농약·비료와 혼용 또는 교호사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재는 친환경농업법상 지정되어 사용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그 효과도 불분명하므로 병해충방제 또는 양분공급용으로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친환경농자재를 병해충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 개념에 포함시켜 농약·비료 혼용 또는 교호살포로 농약·비료 사용 횟수를 줄이고 경종적, 품종적, 천적, 페르몬, 미생물 등과 기타 친환경적 시비·방제수단을 병행·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 등으로 윤작을 기본으로 한 토양관리
- 보조적으로 사용가능한 친환경농자재 사용
 - 퇴비구, 짚 및 산야초, 나무껍질, 재 등
-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등록된 제품을 우선 사용, 구입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차량 이동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자재
 - 모든 병행중 또는 식물생육에 효과가 있다는 등 만병통치약으로 표기된 자재
 - 농업과학기술원의 잔류농약검사 결과 인증 불합격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표2 및 표3의 사용가능 조건을 확인한 후 사용하되 화학합성물질이 포함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불량제품 판별은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값이 현저히 싸거나 특허번호만 기재하고 등록번호가 없는 제품, 조악한 제품 등은 구입을 삼가고 농협, 생산자 단체, 관련협회 등에서 공급한 품질규격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사용.

다. 일반 재배 시 퇴비 등 올바른 농자재 사용요령

- 부산물비료는 짚, 산야초 등을 자연상태로 부숙시킨 퇴비와는 달리 염류농도가 좋은 편이며, 일부 산업폐기물을 섞어 퇴비를 제조하므로 농작물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퇴비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 퇴비의 주 목적은 유기질 공급에 의한 토양물리성 개선에 있음.
- 질소 성분은 1%내외이나 퇴비를 토양물리성 개선제가 아닌 화학 비료의 대체원으로 생각하여 과다 사용할 경우 불순물 등에 의하여 화학비료보다 심각한 피해를 가져 올수 있음.
- 퇴비와 적정량의 화학비료 혼합사용은 토양의 지력유지에 효과적임.
- 적정량의 비료사용 요령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비료회사 등을 통한 정확한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논밭에 알맞은 시비량을 결정한 후 시비. ⑩